강사 임용 규정 [제목개정 2019.9.1.]

개정, 시행 2022.12.1., 학교법인 동은학원 법인행정팀-444(2022.11.24.)

교무팀, 041-530-4969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향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강사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만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학에서 필요한 경우 강의 외에 연구 및 산학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3조(자격) ① 강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석·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 하며, 대학원 강의 담당 강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후 3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충족한 자로 한다. <개정 2019.12.1., 2022.12.1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과목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9.1.>

③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 및 연구경력의 산정은 본교 「대학교원 자격 인정기준(교육경력 및 연구실적) 시행세칙」에 따른다. <신설 2019.12.1.>

④ 학력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학위소지자에 대하여 인정하며, 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학위 수료자로 인정한다. <신설 2019.12.1.>

제4조(결격사유) 본교 「교원인사 규정」 제5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로 임용 될 수 없다. <개정 2019.12.1.>

제5조(임용일)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6조(임용기간)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용하는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1. 학기 중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징계·연구년(6개월 이하)
2.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·퇴직·사망

제7조(당연퇴직)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직한다. <개정 2019.9.1.>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<개정 2019.12.1.>
2.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자(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). 단, 총장이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1.>

제8조(채용) ① 총장은 각 단과대학별 신청을 받아 강사 채용을 실시한다.

②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제6조제2항 또는 학기 시작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채용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9.1.>

③ 총장은 학문후속세대(신진연구자) 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각 대학(원)별 (석)박사학위 신규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채용하는 임용할당제를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20.>

제9조(채용공고) 강사를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5일 이상 공고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심사기구의 구성) ① 총장은 강사의 채용을 위해 단과대학별 채용심사위원회(이하 "채용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채용심사위원회는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. <개정 2019.9.1., 2019.12.1.>

② 채용심사위원회는 학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채용심사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. <개정 2019.9.1.>

③ 심사소위원회는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하며, 심사소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구성은 채용심사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9.9.1.>

④ 심사소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하며 채용심사위원회는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과정과 결과의 정확성 및 공정성 등을 심의한다. <개정 2019.9.1.>

⑤ 총장은 강사의 재임용 심의를 위해 단과대학별 재임용심사위원회(이하 "재임용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방법은 채용심사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한다. <개정 2019.9.1.>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절학기 강사 임용 등 특별한 사유로 채용할 경우 심사소위원회와 채용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9.12.1.>

제11조(심사단계 및 방법) ① 강사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기초심사와 교육역량심사를 통합하거나, 면접심사를 생략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1.>

1. 기초심사 : 지원자의 전공 적합여부
2. 교육역량심사 : 지원자의 전문성 및 교육능력
3. 면접심사 : 지원자의 강의역량 및 교육자적 자질

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60점 이상인 자 가운데 신규임용 대상자와 예비 순위자를 결정하여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9.1.>

③ 신규임용 대상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 순위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9.9.1.>

④ 동점자 발생 시 교육역량점수, 전공적합성점수, 면접점수, 대학교 강의경력기간(정규 학기 수), 강의학점 수가 높은 순으로 정하며, 위의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. <신설 2019.12.1.>

제12조(특별채용) ① 특별채용은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다. <개정 2019.9.1.>

② 삭제 <2019.9.1.>

제13조(교원인사위원회)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채용심사위원회, 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최종 검증·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19.9.1.>

② 교원인사위원회는 강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14조(제척·회피 및 기피) ①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지원자의 친족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강사 채용을 위해 위촉된 심사위원은 지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

을 하여야 한다.

③ 강사 채용 시 지원자가 특정인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5조(강사의 임용) ① 강사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, 임금,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, 면직사유, 재임용 절차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.

② 강사에게는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,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재임용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9.1.>

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강사의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강사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강사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강사 재임용 신청서를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,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 <개정 2019.9.1.>

⑤ 강사의 재임용 여부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·의결하며, 강사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재임용 결과를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재임용심사위원회는 강사가 기준 미충족 등 재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.
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임용 하지 않는다. 다만 계절학기 수업만을 담당하는 강사는 소속장의 복무평가로 재임용을 평가한다. <개정 2019.9.1. 개정 2021.1.1.>

1. 재임용 평점 60점 미만 또는 복무평가 결과가 미충족(F)으로 평가된 자. 복무평가는 다음 각 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한다. <개정 2019.9.1.>
   가. 교육자로서 기본적 자질 및 품위 유지 <신설 2019.9.1.>
   나. 제규정 준수 및 학사행정 협조 <신설 2019.9.1.>
   다. 학과장이 정한 근무조건 <신설 2019.9.1.>
2.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자 <개정 2019.9.1.>
3. 학칙 또는 계약으로 정한 면직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

⑧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⑨ 임용 예정자의 계약사항 등을 교무처에서 정하며, 총장은 서면계약 후 임용한다. <개정 2019.9.1.>

제16조(면직사유)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당해 강사를 면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9.1.>

1. 「학교법인 동은학원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43조의2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<개정 2019.12.1.>
2. 재직 중인 강사가 제4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
3. 견책 이상의 징계 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4.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교과목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
5.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직의 개폐에 따른 경우 <개정 2019.12.1.>

6. 대통령령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임용한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
7. 그 밖에 임용계약으로 정한 사유로 그 계약이 만료된 경우 <개정 2019.9.1.>

제17조(강의시간) ① 강사는 학기별로 주당 6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당 9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. <개정 2019.9.1., 2019.12.1.>

1. 두 개 이상의 학과 또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교수하는 경우 <신설 2019.12.1.>
2. 실험·실습·실기 등 수업시수 3시간을 초과하는 교과를 교수하는 경우 <신설 2019.12.1.>
3. 연구년·보직·휴직 기간 중에 있는 전임교원의 교과를 담당하는 경우 <신설 2019.12.1.>
4.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발생한 교원의 휴직, 임용예정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해당 과목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는 경우 <신설 2019.12.1.>
5. 분반으로 동일 교과를 추가로 담당해야할 경우 <신설 2019.12.1.>

② 삭제 <2019.9.1.>.

③ 강사는 계절학기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, 계절학기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9.9.1.>

④ 강사 임용 후 채용 공고문 외 추가로 강의 배정이 필요할 경우 법정 강의시수(기본 6시간, 최대 9시간) 내에서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9.12.1.>

제18조(급여) ① 강사에게「강의료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」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다. <개정 2019.9.1.>

② 제1항에 따른 강의료 외에 강사에게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한다. <개정 2019.9.1.>

③ 강사의 급여, 지급방식 및 지급일은 계약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9.1.>

④ 강사의 사회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.

[제목개정 2019.9.1.]

제19조(복무) ① 강사는 우리대학의 교원으로서 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
② 강사가 재임용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) 소속 학과장에게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9.1.>

③ 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「사립학교법」, 교육 관계법령 및 본교에서 정한 규정 등에 따른다. <개정 2019.9.1.>

[제목개정 2019.9.1.]

제20조(징계) ① 총장은 부교수 이상 내부교원 4명, 외부인사 1명, 총 5명으로 구성된 비전임교원징계위원회(이하 “징계위원회”)를 구성한다.

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1. 「사립학교법」, 교육관계법령, 정관이나 그 밖의 본교 제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
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4.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③ 총장은 강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.
④ 징계위원회에서는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.
⑤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교원인사 규정」 및 「교원징계 규정」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19.12.1.]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.
제2조(폐지되는 규정) 이 규정 시행과 함께 본교 「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」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서식 1] <개정 2019.9.1.>

강사 신규채용 평가표

성 명		지 원 번 호	
채 용 분 야			

【기초심사/30점】

평가항목	평가기준	항목배점	취득점수	비고
학위 수준	박사학위소지자	15		
	박사과정수료자	12		
	석사학위소지자	9		
	석사과정수료자	6		
	학사학위소지자	3		
전공적합성	매우우수	13~15		
	우수	10~12		
	보통	7~ 9		
	불일치	4~ 6		
	매우불일치	1~ 3		

【교육역량심사/40점】

평가항목	평가기준	항목배점	취득점수	비고
초빙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능력	매우우수	33~40		
	우수	25~32		
	보통	17~24		
	미흡	9~16		
	매우미흡	1~ 8		

【면접심사/30점】

평가항목	평가기준	항목배점	취득점수	비고
강의역량 및 교육자적 자질	매우우수	25~30		
	우수	19~24		
	보통	13~18		
	미흡	7~12		
	매우미흡	1~ 6		

종합의견	

· 평가항목별 불일치 및 미흡 이하의 경우 비고란에, 합계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종합의견란에 사유를 명기
· 전체 심사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인 자는 강사 임용 부적격자로 강사 임용 예정 후보에서 제외됨

2019. x. x.

심사위원 소 속 :

성 명 : (인)

[서식 2]

순천향대학교
SOON CHUN HYANG UNIVERSITY

강사 재임용 신청서

성 명		사 번	
소 속		현 임용기간	
담당과목명			

예정 임용 기간 :

예정담당과목명 : 현 담당과목과 동일

상기 본인은 강사 재임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순천향대학교 총장 귀하

[서식 3] <개정 2019.9.1.>

강사 재임용 평가표

성 명		사 번	
소 속		현 임용기간	
담당과목명			

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	취득점수
강의계획 평가	- 매학기 1차 수강신청 전 강의 계획서 입력 ※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경과 : 강좌 당 5점 감점	25	
강의결과 평가	- 수업평가 표준점수의 평균	50	
강의환류 평가	- CQI 보고서 작성 ※ 미작성 시 강좌 당 5점 감점	25	
합 계		100	

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	평정결과
복무평가	- 교육자로서 기본적 자질 및 품위 유지 - 제규정 준수 및 학사행정 협조 - 소속 학과장(학장)이 정하는 근무조건	P/F	
종합의견(복무평가가 F일 경우 사유를 상세히 기술)			

· 강의(계획,결과,환류)평가 점수가 **60점 미만 또는 복무평가가 F일 경우 재임용 탈락**

년 월 일

학과장 : (인)

재임용심사위원장 : (인)

순천향대학교 총장 귀하